

II - 40	제 목	사무실 인정여부(5)(공동사용)		
회신일자	2005년 1월 6일	회신방법	산자부 사이버민원실	
의요지				
질의) 경제적인 이유로 한 개의 건물 안에 칸막이를 설치(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공사업을 하는 3개의 공사업체가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현황, 도급대장 등 서류일체는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따로 확보하고 있지만 2개의 공사업체는 한 개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다른 1개의 공사업체는 소재지 변경 후 사무실에 책상 등의 사무기기 등을 갖추지 않고 있을 때 이러한 공사업체들을 완전한 각각의 공사업체로 봐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행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아야 할까요?				
회신내용				
답변)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3의 규정에 의해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은 "공사업의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등은 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귀 군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동일주소지나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다른 공사업이나 여러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있어 사진, 평면축적도 등의 제출 서류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다르다면 전기공사업법 제27조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8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